

□ 2022년도 제2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수정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
1	<p>1)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3)</p> <p>□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52 523 965 852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대기업 및 공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중소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5% 이상</td> </tr> <tr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</td> <td>부담액의 15% 이상</td> <td>부담액의 13% 이상</td> <td>부담액의 10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=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 연구개발비</p> <p>※ 그 외의 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</p> <p>※ 향후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&D 긴급지원 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/p>	항목	대기업 및 공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5% 이상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	<p>1)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3)</p> <p>□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(이하 '지원지침')의 적용기간이 '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관유형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3 608 1816 936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대기업 및 공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중소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</td> <td>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0% 이상**</td> </tr> <tr> <td>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</td> <td>부담액의 15% 이상</td> <td>부담액의 10% 이상***</td> <td>부담액의 10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=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 연구개발비</p> <p>** (지원지침) 중소기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이 25%→20% 조정됨</p> <p>*** (지원지침) 중견기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액 기준이 13%→10% 조정됨</p> <p>※ (지원지침) 적용기간은 2022년도 진행되는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임</p> <p>※ 그 외의 연구개발기관은 필요 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</p> <p>※ 「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</p>	항목	대기업 및 공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0% 이상**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***	부담액의 10% 이상	<p>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 및 「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」 적용</p>
항목	대기업 및 공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항목	대기업 및 공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5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30% 이상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* 대비 20% 이상**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***	부담액의 1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
2	<p>2)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4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	<p>2)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4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삭제 	<p>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</p>
3	<p>3)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4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	<p>3)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공고문(p14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삭제 	<p>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시행 '22.1.1) 제65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</p>